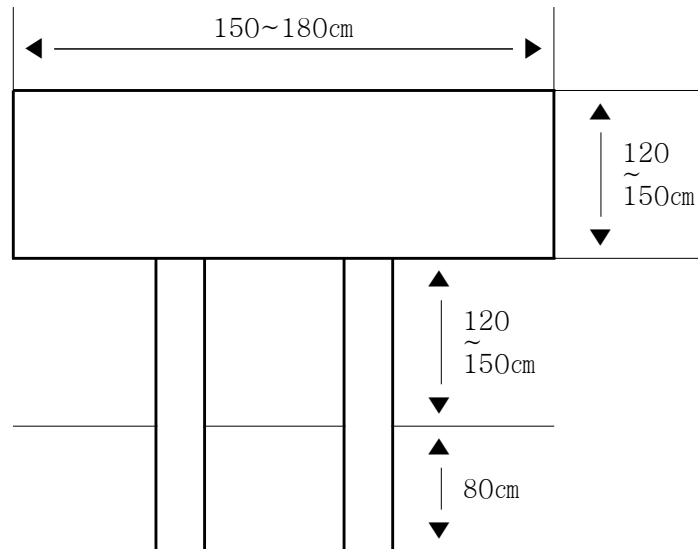


[별표 8]

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(제11조관련)

1. 안내판의 규격



- 두께 및 재질 : 3 내지 4mm 두께의 철판이어야 한다.
- 바탕색 : 청색이어야 한다.
- 글 씨 : 흰색이어야 한다.

2. 안내판의 내용

가. 낚시금지구역

알 림

1. 이 지역은 「수질환경보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입니다.
2. 낚시금지구역에서는 하천·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「수질환경보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행위가 일체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「수질환경보전법」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

○ ○ 경찰서장

나. 낚시제한구역

알 림

1. 이 지역은 「수질환경보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제한구역입니다.
2. 낚시제한구역에서는 하천·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「수질환경보전법」 제2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가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「수질환경보전법」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- (1)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·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
- (2)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「낚시어선업법」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
- (3)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
- (4)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
- (5)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·오줌을 누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
- (6)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·배터리·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
- (7) 「수산자원보호령」에 따른 포획금지 사항
- (8)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년 월 일

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

○ ○ 경찰서장

비고 : 나목의 내용 중 (7) 및 (8)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한다.